

제416회 임시회
' 24. 4. 23.(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혼인 건수는 2013년 9,307건에서 2022년 6,185건으로 10년 만에 34%가 감소함. 또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중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50%에 그쳤고, 특히 20~30대의 경우 38%에 불과해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청년층 결혼 기피 사유로 고용 불안, 청년 실업, 일·가정양립 곤란, 청년층 삶의 우선순위 변화("결혼, 자녀"→"노동") 등의 요인과 함께 결혼 및 주거 비용의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결혼자금 마련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군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충북 혼인 건수 10년 사이 **33% 감소**: 9,275건('12) → 6,185건('22)
-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비중이 **50% 수준**에 그침
 - 특히 **20~30대**는 **38%**에 불과해 청년층 결혼 기피현상 확대
 - ※ 국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응답 비중 변화: 69%('02)→50%('22)
- 결혼 기피사유로는 고용 불안, 청년 실업, 일·가정양립 곤란, 청년층 삶의 우선순위 변화('결혼, 자녀'→'노동') 등의 요인과 함께 결혼 및 주거 비용의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이 출생률을 높이는 주 요인인 만큼,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이 필요함.
-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 타 시·도 유관 조례 제정: **4개 시·도**(부산, 대전, 충남, 전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총칙 규정	제1조	목적	실체 규정	제7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기업 등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협력체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칙 규정	제10조	사무의 위탁
실체 규정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부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	지원 사업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 “작은 결혼식“의 경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 중 하나인 결혼식에 있어 고비용 혼례라는 허례허식(虛禮虛飾)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기피 분위기를 해소하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결혼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5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관련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 예식장 제공, 주거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규정한 바,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조사·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으로 소요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뤄온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두어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던 “결혼”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음.
 - 이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결혼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을 본 조례로 일원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하며, 지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각 조항들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집행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II-4. 첫째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단위: 세, %)

연도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¹⁾	첫째아 모 평균 출산 연령 분포 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3	26.23	2.1	33.9	52.2	9.8	1.8	0.2	0.0
1995	26.49	1.8	29.8	55.9	10.0	2.2	0.3	0.0
2000	27.69	1.4	18.3	59.9	16.7	3.1	0.6	0.0
2001	27.99	1.4	16.9	57.9	19.6	3.6	0.7	0.1
2002	28.29	1.3	15.7	55.2	23.2	3.9	0.8	0.1
2003	28.58	1.0	13.9	54.6	25.5	4.1	0.8	0.1
2004	28.84	0.9	12.5	52.2	28.9	4.6	0.8	0.1
2005	29.09	0.9	11.1	50.6	31.2	5.3	0.8	0.1
2006	29.28	1.0	10.2	49.2	32.9	6.0	0.8	0.1
2007	29.43	1.0	9.5	48.4	33.3	6.9	0.8	0.1
2008	29.61	0.9	8.9	47.1	34.9	7.3	0.8	0.1
2009	29.85	0.9	8.0	45.3	36.6	8.1	1.0	0.1
2010	30.10	1.0	7.6	41.3	40.1	8.9	1.1	0.1
2011	30.25	1.1	7.7	38.5	41.9	9.4	1.3	0.1
2012	30.50	1.0	7.3	34.7	45.5	9.9	1.4	0.1
2013	30.73	1.1	7.3	31.1	47.7	11.2	1.5	0.0
2014	30.97	1.0	7.0	29.1	48.7	12.4	1.7	0.0
2015	31.20	0.9	6.6	28.5	48.0	14.2	1.9	0.0
2016	31.37	0.8	6.6	27.5	46.8	16.1	2.1	0.1
2017	31.62	0.7	6.1	26.8	45.1	18.6	2.5	0.1
2018	31.89	0.7	5.5	25.4	44.6	20.8	2.9	0.1
2019	32.16	0.6	5.0	24.0	44.8	22.0	3.5	0.1
2020	32.30	0.6	4.7	23.1	45.6	22.1	3.9	0.1
2021	32.61	0.3	3.7	21.6	47.2	22.7	4.4	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연령미상자 제외

Ⅱ-7. 결혼에 대한 인식¹⁾

(단위: %)

연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100.0
2002	25.6	43.5	27.2	1.7	0.2	1.8	100.0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
2014	14.9	41.9	38.9	1.6	0.4	2.2	100.0
2016	12.5	39.3	42.9	2.5	0.6	2.2	100.0
2018	11.1	37.0	46.6	2.5	0.5	2.3	100.0
2020	16.8	34.4	41.4	3.5	0.9	3.0	100.0
2022	15.3	34.8	43.2	2.9	0.7	3.2	100.0
남자	17.6	38.2	37.7	2.2	0.6	3.8	100.0
여자	13.0	31.4	48.7	3.5	0.9	2.6	100.0
13~19세	5.1	24.0	56.8	3.7	1.2	9.2	100.0
20~29세	7.5	27.6	53.5	5.1	1.3	5.1	100.0
30~39세	8.9	31.7	52.8	2.5	1.0	3.0	100.0
40~49세	9.0	33.3	50.6	3.4	1.0	2.6	100.0
50~59세	13.7	39.1	42.6	2.3	0.5	1.8	100.0
60세 이상	30.5	41.0	24.7	1.6	0.2	2.0	100.0
초졸 이하	29.3	34.5	29.1	1.9	0.5	4.7	100.0
중졸	19.5	34.5	38.4	2.5	0.5	4.7	100.0
고졸	13.6	34.2	44.4	3.5	0.9	3.4	100.0
대졸 이상	11.4	35.3	47.7	2.7	0.8	2.1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